

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(제4조제1항 관련)

1. 기업역량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심사지표		배점	심사기준
기업역량	기업건실성 (20)	재무상태		20	○ 공인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인증신청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
	관리능력 (40)	선원교육 시스템	교육전담부서	5	○ 선원 교육전담부서 설치 여부
			교육시간	5	○ 선원 1명 당 연간 교육시간
			운영 교육과정 수	5	○ 교육과정 운영 현황
			교육시설	5	○ 교육 시간 및 과정 운영에 적합한 자체 교육장 및 교육설비(교재 포함)의 확보 정도
		선박관리 정보화	IT 시스템 구축	20	○ 선원관리, 선박관리, 항해관리, 재무 및 일반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
	전문인력 (40)	전문인력 확보	SI 확보 정도	30	○ 적당 SI(심화과정 교육을 마친 선박관리 전문가 및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7조 제1항) 인원의 확보기준 대비 확보율
			인력 공급 안정성	10	○ SI 인원 중 5년 이상 근속 SI의 비중
	업무영역 전문성 (20)	업무프로세스 문서화 정도		5	○ 선원관리, 선박관리, 항해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
		관리 선종(船種)의 전문성		15	○ 인증신청 선종 관리경력 및 관리경험 전문인력 보유 현황
해외시장 개척능력 (30)	해외 네트워크 구축		10	○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수 및 거점 수	
	외국어 능력		20	○ SI의 외국어 능력 * 공인 영어 점수 기준	
합 계				150	

2. 서비스 및 품질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

심사항목	세부 심사 항목	심사지표	배점	심사기준
서비스 및 품질	매출액 실적 (30)	선박관리 매출액	10	○ 최근 3년간 관리선박 1척당 평균 매출액 규모의 협회등록 선박관리업체 평균 대비 비율
		해외 매출액 실적	5	○ 최근 3년간 해외 매출액 증가율
		매출액 대비 순이익률	5	○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
		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	10	○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제3자 선박관리 매출 증가율
	선박 관리실적 (40)	선박관리 실적	20	○ 전체 관리선박 수의 선박관리산업협회 회원사 평균 대비 비율
		제3자 관리선박 비중	20	○ 전체 관리선박 중 제3자 관리선박의 비율 또는 수
	관리 서비스 품질 (20)	PSC(항만국통제) 적발 비율	10	○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수 대비 PSC 적발로 인한 출항정지 건수
		사고율	10	○ 최근 3년간 전체 관리선박 대비 5대 중대 사고(화재, 좌초, 충돌, 오염, 사망사고) 발생 건수
	시스템 경영성과 (15)	국제표준인증-품질 (ISO 9001)	5	○ KAB(한국인정원)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
		국제표준인증-환경 (ISO 14001)	5	○ KAB(한국인정원)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
		국제표준인증-안전 (OHSAS 18001)	5	○ KAB(한국인정원)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 유무 및 인증 보유기간
	해외시장 개척실적 (25)	해외시장 개척노력	10	○ 최근 3년간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기업설명회 실적
		외국선박 관리 수주실적	15	○ 최근 3년간 외국선박 관리 신규수주 선박 수
	종합평가 (20)	선박관리시스템 이행 실태 현장심사 결과 인증심사단 종합의견	20	○ 인증심사단의 현장방문 심사 시 서류점검, 최고경영자·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이행실태 및 실제적인 선박관리의 능력 등을 종합평가

합 계	15 0	
-----	---------	--

3. 비고

- 가. 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나.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항목별 점수가 각각 120점 이상이고, 각 세부 심사항목별 점수가 해당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에게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다.